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499호

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고만 규정하던 것을,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되 필요 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자 함(안 3-2-3-2.)

### 2. 의견제출

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도시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 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
- 팩스 : 044-201-5569
- 전자우편 : ljm0806@korea.kr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<정책자료> <법령정보> <입법예고·행정예고>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(044-201-3709, 37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